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직인생략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) /전화*02-2135-5771 /팩스*02-782-6659 담당부서: 경영관리실 교육팀 부서장: 임종근 실장 담당자: 이지연 팀장 e-mail: junetenth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8-325호

시행일자: 2025.08.21.

수신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

업 등록 예정업자 대표이사

참 조 수신처 참조

제 목: 2025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(9월) 실시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- 2. 우리 협회는「화장품법」(법률 제20767호, 2025. 1. 31., 일부 개정) 및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2호, 2022. 1. 14.,개정)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'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'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3. 상기 관련, 우리 협회는 붙임과 같이 '2025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(9월) 교육'을 실시하고자 하오니,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우리 협회 교육센터(edu.helpcosmetic.or.kr)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교육 제반사항 준비로 인해 교육신청기간 종료 후 취소·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검토하고 신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_2025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(9월) 안내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

수신처: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,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화장품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,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

2025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(9월) 실시 안내

□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대상

교육대상 및 목적

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

·최초교육자: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필요.

·보수 교육자: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(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)

·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·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

·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(대표자)

※법적 근거

- -「화장품법」(법률 제20767호, 2025. 1. 31., 일부개) 제5조제7항~제10항 영업자의 의무 등
- -「화장품법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3913호, 2023. 12. 12., 타법개정)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
- -「화장품법시행규칙」(총리령 제2043호, 2025. 8. 1., 일부개정) 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
- -「화장품 법령.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 제2022-2호, 2022. 1. 14., 일부개정)

□ 교육 프로그램

시간	교과목	세부내용	
09:30-10:00	출석 확인(접수대에서 신분증 확인, 서명 후 입실)		
10:00-11:30 [90분]	화장품 표시·광고 준수사항	화장품의 표시·기재,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, 가이드라인 등	
11:30-12:30	중식 (중식 제공 없음)		
12:30-14:00 [90분]	화장품의 문서관리	화장품 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·기록, 예시 등	
14:00-15:00 [60분]	화장품의 안전성 평가	안전성평가 제도, 안전성평가자, 주요 국가별 제도 운영 현황 등	
15:00-16:30 [90분]	화장품법의 이해 (품질, 안전관리 중심)	화장품 법령 체계,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,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,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·벌칙 등	
16:30-17:00 [30분]	최근 화장품법의 재개정 사항	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최근 변경 사항 등	
17:00-	교육평가	10개 문항 출제. 60점(6개 문항) 이상 득점 필요.	

- ※ 출석체크: 입실/퇴실 서명과 함께 교육 중 랜덤으로 교육생을 호명하여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※ 교육일정 및 교과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교육 참여일정

구분	신청기간 및 접수처	교육일정 및 장소	교육시간	모집인원
오프라인 (집합)	09월03일(수), 00:00 ~ 09월15일(월), 23:59	09월23일(화), 10:00-17:00		100명
url	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교육신청 <u>교육신청 클릭</u>	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오시는 길 클릭	6시간	

- ※ 교육 신청기간, 모집인원은 신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※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교육 참여 절차/ 수료기준

교육대상	교육 참여 절차	수료기준
법정교육 대상 전체	①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(edu.helpcosmetic.or.kr)에서 회원가입 ※주의!! 반드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, 가입정보는 화장품 책임판 매업 등록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(업 등록 예정자는 예정 사항으로 기재)	온라인 교육 80%이상 교육이수
■책임판매관리자 (최초/보수)	↓ ②교육신청< 법정과정< 본인에 해당하는 형태(오프라인)로 교육신청 및	+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
■화장비누 취급자 (업등록 예정자)	교육장소 일자 확인 ※ 집합교육< 법정과정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집합 교육	▶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
■교육명령수령 대표자	③ 교육 당일, 아래와 같이 입장. ■ 집합교육: 공지된 교육장소에서 신분증 확인, 서명 후 교육장 입장	할 경우, 교육 종료일로 부터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.
	④교육 수강(10:00-17:00, 총 6시간) ※총 288분 이상(총 교육시간 중 80% 이상)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 ※교육 중간 랜덤으로 출석 확인 진행. 15분 내 미응답 시 미수료 처리.	26 0.
	⑤수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(17:00-17:30) ※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(60점 이상) 맞추면 수료평가 통과 ※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종료 5시~5시 30분 평가 진행	
	(과락 시, 담당자 별도 연락함) ↓ ⑥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수료증 출력	

- ※ 교육평가 과락 시, 교육담당자가 교육 종료 후 1~2일 이내 별도 연락하여 재평가 진행합니다.
- ※ 교육 참여 절차는 운영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교육 수강비 및 납부방법

교육형태	교육대상	교육비	교육비 납부 방법
오프라인(집합)	책임판매관리자(최초/보수)	70,000원	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
	화장비누 취급자(업등록 예정자)	(비과세)	(edu.helpcosmetic.or.kr)→ 수강신청→
	교육명령수령 대표자	*중식 미제공	법정과정 교육 신청 시 납부

※ 교육비 환불은 교육센터에 공지한 환불규정에 따라 집행됨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(필독)

- 가.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(교과목, 교육일, 개최 횟수, 모집 인원 등)은 변경·운영될수 있습니다.
- 나. 교육 대상 본인이 신청한 교육 형태, 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됩니다. 본인 이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의 수료,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참여한 교육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.
- 다. 사전 안내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및 취소·환불이 가능하며, 교육수요가 30%미만인 경우 폐강,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, 공지한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교육비 결제까지 완료 시 접수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라.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 하며 <u>대리</u> 참석이 불가합니다. 또한, 법정교육대상자가 <u>교육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</u>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관련 법령: 화장품법제41조(과태료)제1항제4호

□ 교육 관련 문의

-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(edu.helpcosmetic.or.kr) 내 1:1문의 또는 챗봇 이용

TEL: 02-785-7984(교육: 3번), 1577-8171